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 2018-508호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 2018-509호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고양시 공고 제 2018-511호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고양시 공고 제 2018-515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고양시 공고 제 2018-516호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8-59호	고양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9
고양시 고시 제 2018-60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0
고양시 고시 제 2018-61호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3
고양시 고시 제 2018-62호	벽제 목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87
고양시 고시 제 2018-63호	관산 I-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91
고양시 고시 제 2018-6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결정 고시	92

공 고

고양시 공고 제 2018-4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97호선 소개울길]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 공고	96
고양시 공고 제 2018-501호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단계) 공사완료 공고	101
고양시 공고 제 2018-514호	도시계획시설[소로2-306호선 외 1개소(중고개 취락 내 도로)]사업 실시계획고시 전 열람 공고	103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 제정이유

- 2017. 2. 조직개편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가 각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고양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 설치하는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 나.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함. (안 제5조)
- 다.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31-8075-329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고양시 ○○○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각 구청별로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의견진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 · 직능단체 ·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각 회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정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장애인복지과장 최 석 규
	팀장 성명	장애인시설팀장 신 동 훈
	담당자 성명·전화	신 동 훈 (031-8075-3295)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의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급식지원의 대상·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부터 제14조까지)
- 다.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함.(안 부칙 제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아동청소년과 아동정책팀(031-8075-335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카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아침·점심·저녁 식사별로 급식카드를 이용하여 지원하되, 아동별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급식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유형·방법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 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 및 고양교육지원청 급식업

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학교 방학(여름방학, 겨울방학 등)기간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영양·위생·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6조(급식아동 후원)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외에 경제적·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연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부서		아동청소년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아동청소년과장 고 병 규
	팀장 성명	아동정책팀장 최 병 선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선 미 (031-8075-3353)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시화에 따른 택지개발로 인구가 증가한 인구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구체화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명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를 「고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및 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생태하천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3(주교동)
- 전 화 : 생태하천과 수질관리팀 (031-8075-275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6.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적법화된 시설
-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분뇨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소관부서		생태하천과
입안자	과장 성명	생태하천과장 이 용 진
	팀장 성명	수질관리팀장 김 남 훈
	담당자 성명·전화	김 현 주 (031-8075-2757)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 가. 소, 말 : 100미터 이내 지역
 - 나. 젓소, 양, 사슴 : 250미터 이내 지역
 - 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500미터 이내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p> <p><u>제3조(시장의 책무)</u>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u>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공동주택 단지 내와 그 주변</p>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u>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2조(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2.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10호이상인 지역을 말한다.</p> <p><u><삭 제></u></p> <p><u>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등)</u>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2. 50호 이상의 주거용건물이 밀집된 지역(다만, 농촌부락은 제외한다) 및 그 주변</p> <p>3.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하는 업무용, 상업용 건축물이 5동 이상 밀집된 지역 및 그 주변</p> <p>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p>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6.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적법화된 시설 <p>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u> 2. <u>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u> <p><u><신설></u></p> <p><u>제11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가축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등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u> 	<p><u>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u></p> <p>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u>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u></p> <p><u>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악취와 가축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2. <u>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u></p> <p>3. <u>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u></p> <p>4. <u>야생동물 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u></p> <p>5. <u>애완동물 및 농가에서 부업으로 키우는 1마리 이하의 가축, 5수 이하의 가금류</u></p> <p>② <u>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축(동물포함)사육 시 그 가축 및 시설물의 관리는 사육자 및 시설물 설치자가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u>사업계획서</u></p> <p>2. <u>사육지 위치도</u></p> <p>3. <u>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u></p> <p>④ <u>시장은 제3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등 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허가증을 교부한다.</u></p> <p>⑤ <u>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u></p>	

현행	개정안
<p><u>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p> <p><u>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u><신설></u></p>	<p><u>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별표]</p> <p>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 말 : 100미터 이내 지역 나. 젓소, 양, 사슴 : 250미터 이내 지역 다.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 500미터 이내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지역 </div>

현 행	개 정 안
-----	-------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처리 기간	
		7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사육장 소재지			
사육기 간	사육개 시일자	사육종 료일자	
축사 및 사육두수	축 종	축사	사육두수
	부지면 적	등 수	연건 평
	㎡	등	㎡
변경내 용	변경 일자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p>「고양시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 라 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 (날인 또는 서명)</p> <p>고양시장 귀하</p>			
<p>구 비 서 류</p> <p>1. 사업계획서 1부</p> <p>2. 사육지 위치도 1부.</p> <p>3. 사육시설의 규모 및 평면도 배치도 1부.</p>			수수료
			없음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출산장려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하려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이원화되었던 신청 서식을 통일하는 등 출산장려금 신청과 업무처리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 가. 제명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나.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다. 출산장려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출생일부터 1년” 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마.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여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서식을 일원화하고,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
- 바. 동장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송부일 및 장려금 지급기한을 변경함.(안 제11조)
- 사.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8075-333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사용료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출산장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3. 출산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사업

제6조(출산장려 지원 업무) 시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2.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시책 마련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4.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교육 추진 및 홍보 물품 등의 제작·배부
5.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 출생아가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출산장려금 신청기한)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제10조(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등) ① 동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계좌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아의 자격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 장려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3장 저출산 대책 협의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출산장려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자문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출산대책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 업무 담당 국장, 보육·교육·일자리·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고양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산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협의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1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장 성명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팀장 성명	여성정책팀장 정미자
	담당자 성명·전화	김세영 (031-8075-3335)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u></p>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비 과다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용·물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장려금”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육아”란 출생일로부터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육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육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실제양육자)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대책”이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등의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신설></p>	<p>5. “사용료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수강료·관람료·주차료·수수료 등을 말한다.</p>
<p><신설></p>	<p><u>제3조(시장의 책무)</u>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신설></p>	<p><u>제4조(시민의 책무)</u> ① 시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에 소재하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신설></p>	<p><u>제5조(시행계획)</u> ① 시장은 저출산 대응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 대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출산장려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및 지원체계 3. 출산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설></p> <p><u>제3조(출산장려 지원 업무)</u> 시장은 출산</p>	<p><u>제2장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사업</u></p> <p><u>제6조(출산장려 지원 업무)</u> 시장은 출산장</p>

현행	개정안
<p>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p> <p>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정액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p> <p>1.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p> <p>2. 다자녀 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시책 마련 및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p> <p>3.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p> <p>4. 결혼·임신·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교육 추진 및 홍보물품 등의 제작·배부</p> <p>5.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p> <p>②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 출생아가 타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7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p> <p>②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 출생아가 타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신설></p>	<p>제8조(출산장려금 신청기한)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p> <p>1. 둘째아 30만원</p> <p>2. 셋째아 이상 70만원</p>	<p>제9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p> <p>1. 둘째아: 30만원</p> <p>2. 셋째아 이상: 70만원</p>

현행	개정안
<p>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장려금 지원 안내 등) 동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통장 사본 <p>제7조(장려금 지원 절차) 장려금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장은 출산장려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아의 자격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1개월 이내 신청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원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p>	<p>제10조(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등) 동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신청인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계좌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p>제11조(출산장려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아의 자격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현행	개정안
<p><u>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원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u> <u>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u> <u>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u> <u>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u> <u>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u>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저출산 대책 협의회</u></p> <p><u>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고양시 저출산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u>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출산장려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u> <u>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자문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u> <u>3. 출산대책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u> <u>4. 출산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u> <u>5.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제1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 업무 담당 국장, 보육·교육·일자리·보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양시 의회 의원 2명 이내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p>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산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p> <p>제1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현행	개정안
<p><신설></p>	<p><u>제16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u>제17조(회의 등)</u>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설></p>	<p><u>제18조(의견청취)</u> 위원장은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u>제19조(수당 등)</u>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u>제20조(준용)</u> 협의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u>제10조(포상)</u>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p><u>제21조(포상)</u>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p>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00 동 번)

보 호 자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신 생 아	보호자와의 관계	자녀 중 몇째	년 월 일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경기도 고양시 구		
전 화 번 호	자 택	H. P.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예 금 주	금액(원)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통장사본 1부
담 당 공 무 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분리 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및 대곡역세권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 진행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및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 협력관을 통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인원을 확대하는 등 구성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나.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0조)
- 다. 투자유치 활동 및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
- 라. 기업유치 협력관의 구성, 임기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 전 화 :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투자유치팀 (031-8075-321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사업”이란 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을 포함한다), 대곡역세권개발사업 등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이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에 신설한 기업을 말

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시장은 국내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임직원

3.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6개월 이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위원이 금품,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토의사항·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유치 활동 및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투자기업 지원)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및 매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익계약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지원) 시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업유치 협력관

제18조(구성 등) ① 시장은 고양시 홍보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력관은 6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 사업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③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따른다.

제19조(직무 등) ① 협력관은 유치기업 발굴,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업, 개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 대상은 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하나의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제21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포상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
2.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2명
3. 투자유치 관련 교수 2명

⑤ 포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비밀 준수) 위원회·포상위원회의 위원 및 협력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통일한국고양 실리콘밸리지원과장 김 수 오
	팀 장 성 명	투자유치팀장 홍 재 혁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오 성 (031-8075-3219)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자유치”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유치사업”이란 <u>통일한국 고양실리콘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 등을 포함한다), 대곡역세권개발사업 등 고양시의 기업투자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u>한 사업을 말한다. 2. “국내기업”이란 <u>국내에서 사업</u>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국내복귀기업”이란 「<u>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외국투자자가 출자</u>한 기업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u>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 등을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시에 신설</u>한 기업을 말한다. 7. “본사”란 <u>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u>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연구소”란 「<u>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u>기업부설 연구기관</u>을 말한다. 9. “공장”이란 「<u>산업집적활성화 및</u>

현행	개정안
<p>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유치업무 관련 국장·과장 2.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4.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5.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p>제10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p> <p>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임직원 3. 투자·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4.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5.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삭제></p> <p>제14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p> <p><u>제15조(행정지원)</u> 시장은 국내외 기업 등이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는 전담 부서 지정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p>
<신 설>	<p><u>제16조(민간전문가 등 활용)</u> ① 시장은 기업유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평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u>제17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u> ① 시장은 각 투자유치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사업 2. 기업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박람회와 투자설명회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신 설>	<p><u>제18조(구성 등)</u> ① 시장은 고양시 홍보</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기업유치 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 협력관은 6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투자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2.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3.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 사업 홍보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p>③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④ 협력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따른다.</p> <p>제19조(직무 등) ① 협력관은 유치기업 발굴,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관 회의를 소집하여 기업유치에 관한 활동상황 등을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협력관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포상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포상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한다.</p> <p>③ 포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p>

현행	개정안
	<p><u>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u></p> <p><u>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u>1. 고양시의회 추천 시의원 1명</u></p> <p><u>2.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 2명</u></p> <p><u>3. 투자유치 관련 교수 2명</u></p> <p><u>⑤ 포상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해산한 것으로 본다.</u></p>

고양시 농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07-372호(2007.11.5.)로 농곡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 2010-239호(2010.7.29.), 고양시 고시 제2011-209호(2011.12.6.), 고양시 고시 제 2012-267호(2012.10.17.), 고양시 고시 제2013-45호(2013.1.25.), 고양시 고시 제2013-190호(2013.6.21.), 고양시 고시 제2015-156호(2015.5.29.), 고양시 고시 제2015-244호(2015.8.21.), 고양시 고시 제2016-36호(2016.2.23.), 고양시 고시 제2016-255호(2016.10.21.), 고양시 고시 제2017-22호(2017.1.24.), 고양시 고시 제2017-300호(2017.9.26.), 고양시 고시 제2017-381호(2017.12.22.)로 농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농곡재정비촉진지구 에 대하여,
2.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또한 고양시 농곡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농곡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는 고양시청 도시재생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별관(건우빌딩) 4층)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8. 3. 13.

고 양 시 장

- 아 래 -

1. 재정비촉진지구의 개요 : 변경없음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고양시 농곡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일대	663,287.9	-	663,287.9	

2. 목표연도 :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8년
- 목표연도 : 2020년

3.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 농곡역사 이전 및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농곡역세권중심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젊음이 넘치는 상업복합공간 ‘활기찬 복합도시’,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공간 ‘개성있는 공예특화 도시’, 기반이 쾌적한 생활공간 ‘쾌적한 생활도시’ 마련을 통한 활력과 개성이 넘치는 ‘농곡 행복타운(幸州)’ 조성

4. 재정비 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63,287.9	-	663,287.9	100.0		
대 지	소 계	421,132.4	-	421,132.4	63.4		
	주 거 용 지	347,405.5	-	347,405.5	52.4		
	상 업 업 무 용 지	5,058.0	-	5,058.0	0.8		
	근 생 용 지	4,237.0	-	4,237.0	0.6		
	주 상 복 합 용 지	51,880.9	-	51,880.9	7.8		
	종 교 용 지	10,907.0	-	10,907.0	1.6	종교용지 1개소(능곡2-7)와 기타용지 1개소(능곡2-4) 위치 변경 (면적변경 없음)	
	기 타 용 지	1,644.0	-	1,644.0	0.2		
기 반 시설	소 계	242,155.5	-	242,155.5	36.6		
	공 시 공 설	소 계	34,872.6	-	34,872.6	5.2	
		공 공 문 화	13,495.2	-	13,495.2	2.0	
		학 교	21,377.4	-	21,377.4	3.2	
	공 시 간 설	소 계	61,800.2	-	61,800.2	9.4	
		공 원	33,339.6	-	33,339.6	5.1	행복근린공원 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녹 지	19,350.6	-	19,350.6	2.9	
		광 장	1,259.0	-	1,259.0	0.2	
		공 공 공 지	7,851.0	-	7,851.0	1.2	
	교 시 통 설	소 계	145,482.7	-	145,482.7	22.0	
		도 로	143,818.2	-	143,818.2	21.7	
		주 차 장	1,664.5	-	1,664.5	0.3	공원 내 중복결정 주차장 면적 증가 (955㎡ → 1,058㎡)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없음

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대책 : 변경없음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시설명	개소	부지면적(㎡)	비 고
계	16	53,949.2	
근린공원	2	21,003.0	행복근린공원 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어린이공원	2	8,465.0	
녹 지	9	19,350.6	
광 장	1	1,259.0	
소 공 원	2	3,871.6	

6) 교통계획 : 변경없음

7) 경관계획 : 변경없음

8) 공공디자인계획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63,287.9	-	663,287.9	100.0
주거지역	소계	531,241.5	-	531,241.5	80.1
	제1종일반주거지역	9,854.2	-	9,854.2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446,691.3	-	446,691.3	67.3
	제3종일반주거지역	74,696.0	-	74,696.0	1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7,610.4	-	77,610.4	11.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4,436.0	-	54,436.0	8.2

※ 능곡2구역 내 종교용지와 기타용지 위치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면적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촉진 계획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가. 용적률계획 : 변경없음

나. 기타 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 변경

-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사업시행지침 중 제3장 건축물 시행지침 제28조(건축물의 용적률) 제7항제3호 내용 변경

구분	내 용										
기정	<p>제28조 (건축물의 용적률)</p> <p>⑦ 추가용적률 적용 대상 및 비율</p> <p>3.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5조에 의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점수 74점 이상 : 6% 이하 (단, 건축법 제65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점수를 66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용적률 부여) <table border="1"> <tr> <td>인증점수</td> <td>66점 이상</td> <td>70점 이상</td> <td>74점 이상</td> <td>비고</td> </tr> <tr> <td>재정비촉진지구</td> <td>2% 이하</td> <td>4% 이하</td> <td>6% 이하</td> <td></td> </tr> </table> <p>※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이 이 지침을 준용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66조의2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로서 총에너지절감률 35% 이상 : 5% 이하 	인증점수	66점 이상	70점 이상	74점 이상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2% 이하	4% 이하	6% 이하	
인증점수	66점 이상	70점 이상	74점 이상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2% 이하	4% 이하	6% 이하								
변경	<p>제28조 (건축물의 용적률)</p> <p>⑦ 추가용적률 적용 대상 및 비율</p> <p>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조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의한 녹색건축물 인증점수 74점 이상 : 6% 이하 (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의한 녹색건축물 인증 점수를 66점 이상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용적률 부여) <table border="1"> <tr> <td>인증점수</td> <td>66점 이상</td> <td>70점 이상</td> <td>74점 이상</td> <td>비고</td> </tr> <tr> <td>재정비촉진지구</td> <td>2% 이하</td> <td>4% 이하</td> <td>6% 이하</td> <td></td> </tr> </table> <p>※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이 이 지침을 준용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은 건축물로서 1등급 5%, 2등급 3% 	인증점수	66점 이상	70점 이상	74점 이상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2% 이하	4% 이하	6% 이하	
인증점수	66점 이상	70점 이상	74점 이상	비고							
재정비촉진지구	2% 이하	4% 이하	6% 이하								

※ 상기사항 외에 사업시행지침 변경 없음

다.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경미한 변경 : 변경없음

-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자족성계획) :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나.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145,388.0	-	145,388.0	100.0		
대 지 소 계	105,620.0	-	105,620.0	72.6		
주 거 용 지	103,567.0	-	103,567.0	71.2		
	1,320.0	-	1,320.0	0.9		
	733.0	-	733.0	0.5	유치원용지	
기 반 시 설 소 계	39,768.0	-	39,768.0	27.4		
공 간 시 설 용 지	소 계	15,772.0	-	15,772.0	10.8	
	공 원	10,836.0	-	10,836.0	7.5	선형변경 (면적변경 없음)
	녹 지	4,769.0	-	4,769.0	3.3	
	공공공지	167.0	-	167.0	0.1	미래공공공지
교 통 시 설 용 지	소 계	23,996.0	-	23,996.0	16.5	
	도 로	23,996.0	-	23,996.0	16.5	

※ 종교용지 1개소(능곡2-7)와 기타용지(능곡2-4) 위치 변경(면적변경 없음)
 ※ 공원 내 중복결정된 주차장 면적 증가(955㎡ → 1,058㎡)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계획용적률
명 칭	면 적					
기정	능곡 2-1	52,702㎡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일원	공동주택	60%이하	265.3% 이하
기정	능곡 2-2	30,531㎡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9-10번지 일원			
기정	능곡 2-3	20,334㎡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2-82번지 일원			
기정 변경	능곡 2-4	733㎡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3-10번지 일원	유치원		
변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0번지 일원			
기정	능곡 2-5	32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5번지 일원	종교시설		
기정	능곡 2-6	3,566㎡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0-1번지 일원	공공문화		
기정 변경	능곡 2-7	63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0번지 일원	종교시설		
변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3-10번지 일원			
기정	능곡 2-8	37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3-16번지 일원	종교시설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세대수 : 3,156세대 [입대 350세대] - 전용면적 40㎡ 이하 : 339세대 [입대 281세대] - 전용면적 40~60㎡ 이하 : 1,885세대 [입대 69세대] - 전용면적 60~85㎡ 이하 : 805세대 - 전용면적 85㎡ 초과 : 127세대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건축한계선 : 6m •연결녹지변 건축한계선 : 3m 			

주1) 최고높이는 건축법령에 의거 별도 지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도 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능1	30	보조간선 도로	2,120 (738)	행주내동 395	화정동 120	일반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기정	대로	3	21	25	보조간선 도로	484 (195)	토당동 373-153	토당동 346-1	일반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기정	중로	2	능2	15	집분산 도로	283	토당동 889-2	토당동 80-1	일반도로	고고제100호 01-09-27	
기정	중로	2	능3	15 ~18	보조간선 도로	560 (200)	토당동 889-9	토당동 282-11	일반도로	경고2청제5068호 06-05-15	
기정	중로	2	능4	15	집분산 도로	211	토당동 85-14	토당동 361-24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중로	2	능5	15	보조간선 도로	401 (325)	토당동 36-26	토당동 292-49	일반도로	고고제68호 00-06-10	
기정	소로	3	58	6	국지도로	41	중로 2-능5	토당동 37-13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130	중로 2-능5	대로3-21	일반도로	-	

※()는 구역내 연장

■ 주차장 [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주차장	토당동 53-10 일원	955	증) 103	1,058	경고제2010-239호 10-07-29	공원 내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결정)사유
②	주차장	•면적 변경 - 955㎡ → 1,058㎡	•농곡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면적변경

■ 녹 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99-54 일원	4,769	-	4,769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 지역

■ 공 원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행복	근린 공원	토당동 292-5 일원	20,095 (10,836)	-	20,095 (10,836)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 지역

※형태변경

※()는 구역내 면적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행복근린공원	•경계선형 변경	•종교용지 1개소(능곡2-7)와 기타용지(능곡2-4) 위치 변경에 따른 공원경계 변경(면적변경 없음)

■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 공지	미래공공 용지	토당동 82-1 일원	136	-	136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③	공공 공지	미래공공 용지	토당동 799-75 일원	31	-	31	경고제2010-239호 10-07-29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사회복 지시설	-	토당동 90-1 일원	3,566	-	3,566	경고제2010-239호 10-07-29	공원내 중복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다.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없음

라. 능곡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16) 존치정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고양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일원	663,287.9	-	663,287.9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63,287.9	-	663,287.9	100.0
소계		531,241.5	-	531,241.5	80.1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854.2	-	9,854.2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446,691.3	-	446,691.3	67.3
	제3종일반주거지역	74,696.0	-	74,696.0	11.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7,610.4	-	77,610.4	11.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4,436.0	-	54,436.0	8.2

※ 능곡2구역 내 종교용지와 기타용지 위치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면적변경 없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결정·변경과 도시계획시설(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촉진계획 결정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도 로 [변경없음]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능1	30	보조간선 도로	2,120 (1,367)	행주내동 395	화정동 120	일반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기정	대로	3	21	25	보조간선 도로	484	토당동 373-153	토당동 346-1	일반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기정	중로	1	37	20 ~32	집산도로	1,775 (555)	토당동 413-19	토당동 282-8	일반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기정	중로	1	99	22 ~38	보조간선 도로	212	토당동 282-8	토당동 273-2	일반도로	건고제570호 71-09-27	
기정	중로	1	능1	20	보조간선 도로	431	행신동 650-23	토당동 882	일반도로	경고제69호 78-03-13	
기정	중로	2	능2	15	집분산 도로	283	토당동 889-2	토당동 80-1	일반도로	고고제100호 01-09-27	
기정	중로	2	능3	15 ~18	보조간선 도로	560 (340)	토당동 889-9	토당동 282-11	일반도로	경고2청제5068호 06-05-15	
기정	중로	2	능4	15	집분산 도로	211	토당동 85-14	토당동 361-24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중로	2	능5	15	보조간선 도로	401	토당동 36-26	토당동 292-49	일반도로	고고제68호 00-06-10	
기정	중로	2	능7	18	보조간선 도로	416	토당동 911	토당동 845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중로	2	능8	15	집분산 도로	341	토당동 889-13	토당동 847-4	일반도로	능곡1	
기정	중로	3	능9	12	집분산 도로	442	토당동 345	토당동 289-23	일반도로	고고제39호 02-04-19	
기정	중로	3	능10	12	국지도로	138	토당동 335-114대	344-53대	일반도로	기존 원능1토당	
기정	중로	3	능15	12	집분산 도로	299 (203)	토당동 892대	토당동 899-9주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중로	3	능16	12	국지도로	61	토당동 280-49입	토당동 282-21대	일반도로	고고제190호 13-06-21	
기정	중로	3	47	12	국지도로	25	토당동 799-35도	토당동 280-9입	일반도로	기존 원능1토당	
기정	소로	1	능1	10	집분산 도로	95	토당동 871대	토당동 373-88대	일반도로	고고제190호 13-06-21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334	토당동 653-21도	소로2-31	일반도로	고고제3호 06-01-23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46	토당동 890-9도	소로2-31	일반도로	경고제11호 92-01-20	
기정	소로	2	31	8	집분산 도로	322	토당동 878-8대	토당동 394확	일반도로	고고제10호 03-01-27	
기정	소로	2	40	8	국지도로	39	토당동 337-4	토당동 345	일반도로	고고제68호 00-06-10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55	6	국지도로	115 (88)	토당동 842	토당동 892	일반도로	능곡1	
기정	소로	2	능1	12	국지도로	110	토당동 908도	토당동 849-16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소로	2	능2	8	국지도로	32	토당동 889-13	토당동 889-13	일반도로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소로	2	능3	8	국지도로	30	토당동 653-27	토당동 653-46	일반도로	기존 원능1토당	
기정	소로	덕2	290	8	국지도로	752	토당동 328-8	토당동 268-2	일반도로	경고2청제5068호 06-05-15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40 (32)	토당동 13-29	토당동 394-25	일반도로	고고제189호 00-06-24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146	토당동 289-43	토당동 56-14	일반도로	고고제122호 97-12-30	
기정	소로	3	58	6	국지도로	41	중로2-능5	토당동 37-13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130	중로2-능5	대로3-21	일반도로	-	

※ ()는 지구내 연장

■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토당동 296-4대 일원	381.5	-	381.5	고양고제190호 13-06-21	
변경	②	주차장	토당동 53-10 일원	955	증) 103	1,058	경고제2010-239호 10-07-29	공원 내 중복결정
기정	⑤	주차장	행신동 650-145 일원	784	-	784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⑥	주차장	토당동 344-3 일원	499	-	499	경고제2010-239호 10-07-29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경(결정)사유
②	주차장	•면적 변경 - 955㎡ → 1,058㎡	•능곡2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면적변경

(2) 공간시설

■ 공 원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㉕	토당 제2	근린 공원	토당동 3-39 일원	173,007 (908)	-	173,007 (908)	경고제570호 71-09-27	자연 녹지지역
변경	①	행복	근린 공원	토당동 292-5 일원	20,095	-	20,095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 녹지지역
기정	②	행주	어린이 공원	행신동 653-22 일원	5,761	-	5,761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 녹지지역
기정	①	희망	소공원	토당동 849-5 일원	3,321	-	3,321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 녹지지역
기정	③	공원	어린이 공원	토당동 878-7 일원	2,704	-	2,704	-	자연 녹지지역
기정	능1	공원	소공원	토당동 335-90 일원	550.6	-	550.6	고고제190호 13-06-21	자연 녹지지역

※ ()는 지구내 면적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행복 근린공원	•경계선형 변경	•종교용지 1개소(능곡2-7)와 기타용지(능곡2-4) 위치 변경에 따른 공원경계 변경(면적변경 없음)

■ 녹지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토당동 277-18 일원	1,592.6	-	1,592.6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①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847 일원	3,379	-	3,379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②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99-54 일원	4,769	-	4,769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③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292-31 일원	2,651	-	2,651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④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336-41 일원	1,780	-	1,780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⑥	녹지	연결 녹지	행신동 653-9 일원	1,142	-	1,142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⑦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880-17 일원	1,992	-	1,992	경고제2010-239호 10-07-29	자연녹지지역
기정	⑧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402 일원	1,104	-	1,104	고고제190호 13-06-21	자연녹지지역
기정	⑨	녹지	연결 녹지	토당동 399 일원	941	-	941	고고제190호 13-06-21	자연녹지지역

■ 광장 [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광장	일반 광장	토당동 343-11 일원	1,259	-	1,259	경고제2010-239호 10-07-29	

■ 공공공지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 공지	미래공공용지	토당동 897-5 일원	7,684	-	7,684	고고제2017-300호 17-09-26	-
기정	②	공공 공지	미래공공용지	토당동 82-1 일원	136	-	136	경고제2010-239호 10-07-29	
기정	③	공공 공지	미래공공용지	토당동 799-75 일원	31	-	31	경고제2010-239호 10-07-29	

(3)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㉟	공공 청사	동주민 센터	토당동 335-4 일원	2,262	-	2,262	03.03.31	능곡주민센터
기정	㉞	공공 청사	동주민 센터	토당동 373-55 일원	4,657	-	4,657	경고제2010-239호 10-07-29	행주문화센터
기정	①	공공 청사	우체국	토당동 296-75 일원	399.2		399.2	-	능곡우체국
기정	②	공공 청사	치안 센터	토당동 373-29 일원	727	-	727	경고제2010-239호 10-07-29	-

■ 학 교 [변경없음]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㉟	학교	초등 학교	토당동 301 일원	20,684.4	-	20,684.4	경고 제357호 88-12-31	능곡초교
기정	㉞	학교	중중합 교	토당동 394 일원	35,649 (693)	-	35,649 (693)	경고 제337호 75-10-14	능곡

※()는 지구내 면적

■ 체육시설 [변경없음]

■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체육 시설	-	행신동 649-1 일원	5,450	-	5,450	경고제2010-239호 10-07-29	능곡 타운센터

■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㉟	사회복 지시설	-	토당동 335-4 일원	2,262	-	2,262	경고제2010-239호 10-07-29	중복지정-공공청사㉟
기정	㉞	사회복 지시설	-	토당동 373-55 일원	4,657	-	4,657	경고제2010-239호 10-07-29	중복지정-공공청사㉞
기정	①	사회복 지시설	-	토당동 90-1 일원	3,566	-	3,566	경고제2010-239호 10-07-29	공원내-중복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고시한다.

18)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비치한 도서와 같음)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녹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48번지에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72	12,694	209,275.5	30	5,788	95,897.9	12	2,186	50,589.1	30	4,720	62,788.5
	변경	72	12,694	214,591.4	30	5,788	95,897.9	12	2,186	50,874.2	30	4,720	67,819.3
광로	기정	1	567	2,236.7	-	-	-	-	-	-	1	567	2,236.7
대로	기정	3	2,789	60,309.2	-	-	-	1	420	18,088.8	2	2,369	42,220.4
	변경	3	2,789	65,625.1				1	420	18,373.9	2	2,369	47,251.2
중로	기정	25	5,883	113,954.4	5	2,778	64,901.0	11	1,766	32,500.3	9	1,339	16,553.1
소로	기정	43	3,455	32,775.2	25	3,010	30,996.9	-	-	-	18	445	1,778.3

주) 지구내 해당 연장 및 면적 총괄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2	30	주간선도로	5,625 (420)	광장44 성사동272-4	용두동고양시계 용두동1-44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80호 91-07-19	
변경	대로	2	12	30 ~ 31.95	주간선도로	5,625 (420)	광장44 성사동272-4	용두동고양시계 용두동1-44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280호 91-07-19	[중복결정] 완충녹지5호 (168.2㎡)
기정	대로	3	1	27.9	주간선도로	1,123	대로3-30 도내동 1126-1	대로2-12 도내동 94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09-93 5호 09-09-28	
변경	대로	3	1	27.9 ~ 30.9	주간선도로	1,123	대로3-30 도내동 1126-1	대로2-12 도내동 94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09-935 호 09-09-28	[중복결정] 완충녹지11호 (296.3㎡)
기정	대로	3	30	25	주간선도로	5,430 (1,246)	대로2-6 화정동 428-10	대로2-13 용두동 40-3	일반 도로	건고 제570호 71-09-27	
변경	대로	3	30	25~ 30.4	주간선도로	5,430 (1,246)	대로2-6 화정동 428-10	대로2-13 용두동 40-3	일반 도로	건고 제570호 71-09-27	[중복결정] 완충녹지16호 (1,125.7㎡) 완충녹지19호 (1,352.0㎡) 완충녹지20호 (1,495.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2-12호선	대로 2-12호선	○ 폭원변경 - 당초 : 30.0m - 변경 : 30.0 ~ 31.95m	○ 방음벽 설치에 따른 폭원 변경 - 방음벽 지상부0.8m(완충녹지 → 도로)시설변경 - 방음벽 지하부(기초) 1.15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대로 3-1호선	대로 3-1호선	○ 폭원변경 - 당초 : 27.9m - 변경 : 27.9 ~ 30.9m	○ 방음벽 설치에 따른 폭원 변경 - 방음벽 지상부0.8m(완충녹지 → 도로)시설변경 - 방음벽 지하부(기초) 2.2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대로 3-30호선	대로 3-30호선	○ 폭원변경 - 당초 : 25.0m - 변경 : 25.0 ~ 30.4m	○ 방음벽 설치에 따른 폭원 변경 - 방음벽 지상부0.8m(완충녹지 → 도로)시설변경 - 방음벽 지하부(기초) 4.6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녹지	완충녹지	(5개소)	53,168.3	감) 904.8	52,263.5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원흥동 748공	1,959.1	감) 116.9	1,842.2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중복결정] 대로 2-12 (168.2㎡)
변경	11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1013공	1,172.0	감) 99.9	1,072.1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중복결정] 대로 3-1 (269.3㎡)
변경	16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1007공	4,881.4	감) 194.9	4,686.5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중복결정] 대로 3-30 (1,125.7㎡)
변경	19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1105공	5,440.8	감) 234.7	5,206.1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중복결정] 대로 3-30 (1,352.0㎡)
변경	20	녹지	완충녹지	도내동 1108공	6,332.5	감) 258.4	6,074.1	국토부고시 제2009-935호 (09-09-28)	[중복결정] 대로 3-30 (1,495.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완충녹지	○ 면적감소 (감116.9㎡) - 당초 : 1,959.1㎡ - 변경 : 1,842.2㎡	○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 편입 - 방음벽 지상부 : 폭 0.8m, 면적 116.9㎡ 변경결정 - 방음벽 지하부(기초) 1.15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11	완충녹지	○ 면적감소 (감99.9㎡) - 당초 : 1,172.0㎡ - 변경 : 1,072.1㎡	○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 편입 - 방음벽 지상부 : 폭 0.8m, 면적 99.9㎡ 변경결정 - 방음벽 지하부(기초) 2.2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16	완충녹지	○ 면적감소 (감194.9㎡) - 당초 : 4,881.4㎡ - 변경 : 4,686.5㎡	○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 편입 - 방음벽 지상부 : 폭 0.8m, 면적 194.9㎡ 변경결정 - 방음벽 지하부(기초) 4.6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19	완충녹지	○ 면적감소 (감234.7㎡) - 당초 : 5,440.8㎡ - 변경 : 5,206.1㎡	○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 편입 - 방음벽 지상부 : 폭 0.8m, 면적 234.7㎡ 변경결정 - 방음벽 지하부(기초) 4.6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20	완충녹지	○ 면적감소 (감258.4㎡) - 당초 : 6,332.5㎡ - 변경 : 6,074.1㎡	○ 방음벽 설치구간 도로 편입 - 방음벽 지상부 : 폭 0.8m, 면적 258.4㎡ 변경결정 - 방음벽 지하부(기초) 4.6m (도로, 완충녹지)중복결정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8-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1	30~46	주간선도로	11,160	대로3-25 성사동 523-5	벽제동 고양시계 벽제동 산38-14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7 (1,563㎡)
변경	대로	2	11	30~46	주간선도로	11,160	대로3-25 성사동 523-5	벽제동 고양시계 벽제동 산38-14	일반 도로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기정	중로	2	59	15	집산도로	758	대로2-11 원당동 산29-4	대로3-28 원당동 378-11	일반 도로	경고 제9호 78-03-12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7 (252㎡)
변경	중로	2	59	15	집산도로	758	대로2-11 원당동 산29-4	대로3-28 원당동 378-11	일반 도로	경고 제9호 78-03-1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로 2-11호선	대로 2-11호선	○ 변경없음(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7) 이설에 따른 중복결정
중로 2-59호선	중로 2-59호선	○ 변경없음(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7) 이설에 따른 중복결정

나.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변경)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고압선 (철탑)	원당동 239-2일원	3,466	증)17,696	21,162	산고제42호 04-04-14	전체 구간 중 금회이설구간 L=1,224m [중복결정] 대로2-11 (1,563㎡), 중로2-59 (252㎡)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7	고압선 (철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설(송전철탑 2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원당동 239-2 일원 - 면적 : 21,162㎡ (송전탑 : 3,281㎡) 98㎡ (이설 철탑면적 증가) 283㎡ (기정 철탑면적 감소) - 연장 : 1,224m(금회이설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 (15만4천볼트)의 서울-문산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저축되는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의 이전설치로 인한 선하지 및 송전탑부지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 대로2-11호선 및 중로2-59호선 중복결정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가.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철탑부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98	
1	원당동	208-2	전	905	48	
2	원당동	208-1	전	1844	1	
3	원당동	산31-2	임	3,053	49	

2)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7,881	
1	원당동	201-18	체	383	42	
2	원당동	201-96	체	96	4	
3	원당동	1087-1	임	6,966	11	
4	원당동	1063-13	천	3,440	267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편입	
5	원당동	212-3	답	3,818	1,047	
6	원당동	212-18	답	836	63	
7	원당동	212-16	답	1,537	131	
8	원당동	212-20	답	256	157	
9	원당동	212-4	답	470	69	
10	원당동	212-19	답	256	178	
11	원당동	212	전	1,729	674	
12	원당동	211	전	2,832	826	
13	원당동	209-2	전	1,843	538	
14	원당동	209-3	전	1642	223	
15	원당동	209-1	전	378	110	
16	원당동	209-4	전	2528	530	
17	원당동	208-3	전	2028	427	
18	원당동	208-2	전	905	154	
19	원당동	208-1	전	1844	582	
20	원당동	208-7	답	835	77	
21	원당동	249-3	답	119	15	
22	원당동	249-2	도	569	110	
23	원당동	249-15	전	291	57	
24	원당동	249-10	답	423	133	
25	원당동	249-7	대	846	358	
26	원당동	249-1	답	1030	302	
27	원당동	249-14	전	1004	803	
28	원당동	249-9	답	1470	41	
29	원당동	249-16	답	524	36	
30	원당동	217-4	대	3035	30	
31	원당동	221-10	잡	1724	742	
32	원당동	239-1	답	992	20	
33	원당동	240-1	답	16	16	
34	원당동	240-2	답	268	61	
35	원당동	221-12	잡	133	62	
36	원당동	241-9	답	85	11	
37	원당동	506-3	임	19,001	1,065	
38	원당동	무지번	도		62	
39	원당동	481	전	969	200	
40	원당동	486	답	1,980	830	
41	원당동	482-1	답	2,111	141	
42	원당동	486-2	답	28	2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공부	편입	
43	원당동	487	답	106	68	
44	원당동	487-1	답	373	86	
45	원당동	1056-1	도	233	13	
46	원당동	1057	구	1,179	49	
47	원당동	1057-1	구	338	41	
48	원당동	산30-5	임	2,497	40	
49	원당동	산30-4	임	2,352	772	
50	원당동	산30-6	도	756	280	
51	원당동	산30-9	임	4,622	235	
52	원당동	산30-8	임	955	447	
53	원당동	산30-2	임	1,892	280	
54	원당동	산31-2	임	3,053	1,062	
55	원당동	341-1	전	2,282	380	
56	원당동	산31-1	임	4,915	964	
57	원당동	341-5	전	115	26	
58	원당동	341-6	전	639	159	
59	원당동	산32-11	임	3,152	696	
60	원당동	산32-2	임	13,332	1,050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벽제 목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3-6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 벽제 목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벽제목암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가.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3-6번지 일원
 - 나. 면 적 : 173,605.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나.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개발로 고양시 균형발전 도모
 - 다.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없음)
 - 가. 시행자 : (주)에스디산업개발
 -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224 농장마을 상가동

지하1층 101호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13. 3. 22.(구역지정일) ~ 공사완료 공고일(2019. 12. 12. 예정)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173,605.6	100.0		
주택 용지	소 계	98,665.3	56.9		
	단독주택	2,695.0	1.6		
	공동주택	연립주택	11,341.3	6.5	
		아파트	84,629.0	48.8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74,940.3	43.1		
	공 원	근린공원	26,679.8	15.4	
		근린공원	25,163.8	14.5	
		어린이공원	1,516.0	0.9	
	녹 지	완충녹지	15,681.6	9.0	
		완충녹지	10,051.5	5.8	
		경관녹지	5,630.1	3.2	
	유 치 원	2,096.3	1.2		
	하 천	5,289.1	3.0		
	주 차 장	1,111.5	0.6		
도 로	24,082.0	13.9	하천중복면적 : 185m ²		

7.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변경 사항 (변경없음)

8.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9.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0.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해당없음)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 (☎8075-3162)

12. 기타사항

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안에서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같은법 제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할 수 있음

나. 「도시개발법」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3. 주택규모(변경)

[기 정]

구분	번호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계획인구 (인)	층수	용적률 (%)	비고
총 계			98,665.3	1,939	5,178	-	-	-
단독 주택 용지	단독1	-	2,695.0	12	32	4층이하	180	세대당 2.67인
	연립1	85㎡ 초과	11,341.3	39	104	4층이하	180	
공동 주택 용지	공동1	소 계	63,653.3	1,320	3,525	평균층수 18층 이하	230	
		60㎡ 이하	63,653.3	554	1,479			
	60㎡ ~ 85㎡	766		2,046				
	공동2	소 계	20,975.7	568	1,517			
		60㎡ 이하		543	1,450			
		60㎡ ~ 85㎡		25	87			

[변 경]

구분	번호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계획인구 (인)	층수	용적률 (%)	비고
총 계			98,665.3	1,939	5,178	-	-	-
단독 주택 용지	단독1	-	2,695.0	12	32	4층이하	180	세대당 2.67인
	연립1	85㎡ 초과	11,341.3	39	104	4층이하	180	
공동 주택 용지	공동1	60㎡ ~ 85㎡	63,653.3	1,320	3,525	평균층수 18층 이하	230	
	공동2	60㎡ ~ 85㎡	20,975.7	568	1,517			

14.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변경없음)

관산 I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2-158호(2012.6.22.)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7-346호(2017. 11.24.)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된 덕양구 관산동 190번지 일원 「관산-1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 03. 13.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관산 I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해 제	주택재개발사업	관산 I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관산동 190번지 일대	36,044	-

2) 정비구역 해제사유

- 관산 I -1 정비구역은 고양시 고시 제2012-158(2012.6.22.)호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됨.

도시계획시설(학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18-50(2018. 3. 6.)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사업에 대하여 실습동 표기 누락 및 면적 오기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0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조성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학교	대학 (중부대학교)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13-1번지 일원	264,960	고양시 고시 제2012-311호 (2012.11.23)	

- 토지이용계획(세부조성계획 변경없음)

시설명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264,960	100.0	
교육기본시설	34,847	13.2	체육시설용지3 일부 실습동으로 변경
지원시설	28,933	10.9	
부속시설	-	-	
도 로	14,417	5.4	
광 장	10,247	3.9	
주차장	1,872	0.7	
공 원	31,835	12.0	
녹 지	142,809	53.9	

- 건축계획(변경)

시 설 명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총 계	10,677.58	65,020.43	10,677.58	65,020.43	
A동 (연구강의동)	4,924.357	30,477.854	4,924.357	30,477.854	
B동 (연구강의동)	4,488.700	28,678.680	4,488.700	28,678.680	
기숙사	796.562	5,148.151	796.562	5,148.151	
실습동	467396	715.740	467.96	715.74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
-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주소: “별첨 토지조서 참조” (변경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계					264,960							
1	대자동	610-7	학	7	7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	대자동	610-5	학	921	921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3	대자동	610-3	학	346	346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4	대자동	610-6	학	194	194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5	대자동	610-4	학	142	142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6	대자동	613	답	1,060	1,060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7	대자동	613-15	학	593	593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8	대자동	667	답	384	384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9	대자동	613-1	임	190,819	190,819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0	대자동	613-16	학	61,643	61,643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1	대자동	613-17	임	266	266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2	대자동	613-18	임	1,722	1,722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3	대자동	613-19	임	123	123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4	대자동	613-20	임	893	811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5	대자동	613-21	임	105	105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6	대자동	613-22	임	552	552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7	대자동	613-23	임	1,325	1,325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8	대자동	613-24	임	149	149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19	대자동	613-25	임	27	27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0	대자동	613-9	학	1,152	1,152	학교법인 중부회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면부적 (㎡)	편입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관계	
21	대자동	613-3	임	171	171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2	대자동	613-4	임	259	259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3	대자동	1283	천	296	296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4	대자동	1284	천	253	253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25	대자동	613-14	임	1,640	1,640	학교법인 중부학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755	100%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3-97호선 소개울길] 실시계획(변경)고시 전 열람 공고

1. 우리시 일산동구 중산동 105-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97호선 소개울길]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제출되어, 같은법 제90조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1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0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05-9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97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97	10~12	보조 간선 도로	382	소로1-2 중산동 1002	중로2-154 중산동90-9	일반 도로		경고 제5132호 (‘01.01.05.)	면적: 4,299.3㎡
변경	중로	3	97	12	보조 간선 도로	382	소로1-2 중산동 1002	중로2-154 중산동90-9	일반 도로			4,639.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기정	중산동	1766-1	도	49.8	49.8	공		고양시					
2	기정	"	105-12	도	305.0	305.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	기정	"	105-9	도			국	국방부						
	변경	"	105-9	도	525	105	국	국방부						
4	기정	"	105-11	도	4.0	4.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5	기정	"	105-3	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0동 1402호 (진관동,은평뉴타운 마고정)	봉주희						
	변경	"	105-3	도	12	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0동 1402호 (진관동,은평뉴타운 마고정)	봉주희						
6	기정	"	61-55	도	229.0	229.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7	기정	"	61-34	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5, 상용아파트 80동 601호	홍광자 외6인						
	변경	"	61-34	도	26	2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5, 상용아파트 80동 601호	홍광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지구아파트 23-801	홍중석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1 이매촌 1021-201	홍경석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 111-605	홍인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230-5 현대아파트 80동 204호	홍지수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7 행당대림아파트 127-204	홍명순						
서울 중구 신당동 842 약수하이츠 111-605	변수자													
8	기정	"	1767	도	1,643.5	1,643.5	공	고양시						
9	기정	"	105-4	도			국	기획재정부						
	변경	"	105-4	도	55	19	국	기획재정부						
10	기정	"	106-4	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8	이찬우						
	변경	"	106-4	도	39	39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38	이찬우						
소계	기정				2,231.3	2,231.3								
	변경				2,888.3	2,888.3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1	기정	중산동	105-1	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0동 1402호 (진관동,은평뉴타운 마고정)	봉주희				
	변경	"	105-1	도	89	4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90, 310동 1402호 (진관동,은평뉴타운 마고정)	봉주희				
12	기정	"	106-5	도	402.0	402.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13	기정	"	106-9	도	251.0	251.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14	기정	"	106-10	도	4.0	4.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15	기정	"	104-5	도	33.0	33.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16	기정	"	104-6	도	4.0	4.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17	기정	"	104-2	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	104-2	도	95	79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18	기정	"	104-3	도			국	기획재정 부				
	변경	"	104-3	도	108	18	국	기획재정 부				
19	기정	"	999-20	천	20.0	20.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0	기정	"	999-21	천	28.0	28.0	국	국토교통 부				
21	기정	"	103-9	도	194.0	194.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2	기정	"	103-5	도	73.0	73.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3	기정	"	1000-11	도	424.0	424.0	국	국토교통 부				
24	기정	"	83-5	도	52.0	52.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소계	기정				1,485	1,485						
	변경				1,777	1,624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의 종류	
25	기정	"	103-1	답	5.0	5.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6	기정	"	85-1	도	178.0	178.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7	기정	"	85-8	도	70.0	70.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8	기정	"	96-2	도	7.0	7.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29	기정	"	90-1	임	60.0	60.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0	기정	"	90-11	도	88.0	88.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1	기정	"	90-12	도	26.0	26.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2	기정	"	90-13	도	1.0	1.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3	기정	"	69-4	도	12.0	12.0	공	고양시				
34	기정	"	90-14	도	75.0	75.0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LH				
35	기정	"	1000-13	도	61.0	61.0	국	국토교통부				
소계	기정				583	583						
	변경				583	583						
계	기정				4,299.3	4,299.3						
	변경				5,248.3	4,639.3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1단계)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14-304호('14.10.17.)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되고, 고양시 고시 제2017-380호('17.12.22.)로 최종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되어 사업시행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제30조의2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3

고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 명칭 :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70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고양시청로 10
- 성명 고양시장

4. 사업 시행기간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8. 12. 31

5. 개발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시행 내역

가. 전체 공사시행 내역

구분	용도별 면적(m ²)	합계	단독주택 용지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종교용지	주차장	기반시설
전체		54,174.9	7,056.5	1,247	26,681.3	2,649	1,000.2	15,540.9
금회시행	1단계	11,258.9	5,763.5	-	2,494.3	-	1,000.2	2,000.9
잔여공사	2단계	42,916	1,293	1,247	24,187	2,649	-	13,540

나. 금회 공사시행 세부내역

공종별	사업량	비고
조성면적	11,259m ²	
관로공	우수관로 D450~D600 ⇒ 291.2m 오수관로 D200 ⇒ 252.4m 상수관로 D80 ⇒ 310.0m	
포장공	아스콘포장 15.8a	
주차장	1,000m ²	
공원	107m ²	

6. 관련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7. 의견 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8. 기 타 : 본 내용은 개별통지를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은 공람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소로2-306호선 외 1개소 (중고개 취락 내 도로)]사업 실시계획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306호선 외 1개소(중고개취락 내 도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제출되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13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시점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02번지
- 종점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소로3-306호선, 소로3-228호선(중고개취락 내 도로)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²)	비고
결정	소로	3	306	8	665		
금회시행	소로	3	306	8	678	6,708m ²	결정 연장 오기정정 (전체시행)
결정	소로	3	228	6	313		
금회시행	소로	3	228	6	300	2,167m ²	결정 연장 오기정정 (전체시행)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성명 : 고양시장(공사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2019.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자.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

차.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 소로 3-306호선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02	천	46,973	23	국토교통부	국			
2	〃	160-9	잡	992	26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16	박희남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주식회사 외환은행	근저당
3	〃	288-5	차	300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능로 406-21	최규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 릉로18길 13-20	임순희			
4	〃	288-7	전	2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능로 406-21	최규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 릉로18길 13-20	임순희			
5	〃	288-1	도	73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능로 406-21	최규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 릉로18길 13-20	임순희			
6	〃	288-2	전	88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능로 406-21	최규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 릉로18길 13-20	임순희			
7	〃	806-2	구	470	312	국토교통부	국			
8	〃	287-1	전	452	1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능로 406-21	최규인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 릉로18길 13-20	임순희			
9	〃	285-9	전	659	5	서울시 서대문구 용암로 33, 102동 1403호	장기원			
10	〃	287	전	1,158	119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5동 1302호	이진규			
11	〃	286-8	전	249	121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12	〃	289	전	1,469	107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5동 1302호	이진규			
13	〃	289-1	전	68	31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5동 1302호	이진규			
14	〃	286-7	전	1,541	281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15	〃	290-6	전	1,027	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91-1	최봉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지상권
16	〃	286-6	전	339	31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17	〃	290-1	전	160	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91-1	최봉근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지상권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8	〃	286-4	도	2	2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19	〃	290-2	답	935	1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42	최석희			
20	〃	286-1	대	330	38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서서울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
21	〃	286-2	전	512	13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7-42	최석희			
22	〃	286-5	전	448	11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신득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서서울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
23	〃	281	답	935	5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60	이일호			
24	〃	280	전	321	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2	전병무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60, 327동 상가 101호	은평 뉴타운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25	〃	281-5	도	12	12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9가길 3	성구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9가길 3	김종숙			
26	〃	281-4	대	323	1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9가길 3	성구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9가길 3	김종숙			
27	〃	281-3	답	338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60	이일호			
28	〃	279-1	답	2,120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7, 나동 3층	이해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29	〃	279-2	도	17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7, 나동 3층	이해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30	〃	272-4	전	402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2	전병무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60, 327동 상가 101호	은평 뉴타운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31	〃	279	대	313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7, 나동 3층	이해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32	〃	808	도	997	741	국토교통부	국			
33	〃	273-3	전	810	1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775	윤금화	채무자:대한에수장로회북한산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2-2	현기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34	〃	278-14	답	1,002	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34	이상우			
35	〃	278-13	도	27	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2	이상우			
36	〃	278-2	대	330	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2	이상우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37	☞	278-19	도	9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10	정인숙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원당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2	이상우			
38	☞	278-12	대	90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10	정인숙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3번길 36	원당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39	☞	278-18	답	328	28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129번길 11	정효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8-2	이상우			
40	☞	273-1	도	19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3	대한예수 교장료회 주님의 숲교회			
41	☞	278-16	답	644	159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0-1 올림푸스아파트-1002	이길선			
42	☞	273-2	전	268	9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12-2	현기도	채무자:대한에수장료회북한산교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43	☞	278-8	도	74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36-9	백종한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6길 10	연신내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44	☞	278-7	도	85	7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4-1308	이규삼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45	☞	278-9	답	675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40	신현조			
46	☞	278-1	대	331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40	신현조			
47	☞	277	답	3,074	55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4-704	이상원			
48	☞	275	전	2,387	160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9-26	이귀영			
49	☞	276-1	전	1,667	37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0-9	박희남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5	벽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0	☞	271-7	전	436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50-2	최경연			
51	☞	250-1	전	7,177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50-2	최경연			
52	☞	276	창	130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0-9	박희남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5	벽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53	☞	276-2	도	18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16	박희남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75	벽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54	☞	229-5	전	930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9-1403	정한영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55	〃	229-4	도	205	5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36 은빛마을 609-1403	정한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 동 456-12 동광갈현베르빌 - 1109	이성숙			
56	〃	218-11	전	9,652	20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78	홍정인			
57	〃	216-2	전	339	35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78	홍정인			
58	〃	216-1	전	1,473	2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19	김명신			
59	〃	215	전	357	124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19	김명신			
60	〃	230	전	985	8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50-2	최경연			
61	〃	807	구	4,099	36	국토교통부	국			
62	〃	231-12	전	451	10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10	신창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2 별빛마을 809-401	신승철			
63	〃	231-1	대	330	6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 로 141번길 8, 102동 1205호	신영수			
64	〃	231-2	전	200	15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10	신창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2 별빛마을 809-401	신승철			
65	〃	214	전	1,851	37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19	김명신			
66	〃	810	도	569	517	국토교통부	국			
67	〃	231-6	전	1,091	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7-1501	임채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68	〃	211-13	도	731	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69	〃	231-3	전	1,091	4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7-1501	김혜연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지상권
									고양 세무서	근저당
70	〃	211-10	전	1,097	2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71	☞	211-11	전	1,246	45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72	☞	232	전	136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47	손상균		고양시 덕양구	압류
73	☞	234-1	대	262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 현로 11길 12-6 에이동 101호	임채환			
74	☞	234-4	대	73	2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5	주식회사 벤엘종합 건설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75	☞	234	목	526	1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5	주식회사 벤엘종합 건설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76	☞	235-4	답	17	6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5	주식회사 벤엘종합 건설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77	☞	235-3	대	182	11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16-1201	정해욱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
78	☞	211-12	전	64	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79	☞	235-1	도	44	44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16-1201	정해욱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동2가 21-7	백헌복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
80	☞	211-3	도	42	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81	☞	211-16	전	63	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82	☞	211-4	전	218	9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83	☞	235-2	대	152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10-504	정해욱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84	☞	211-2	전	704	1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박숙자			
85	☞	235	대	58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10-504	정해욱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86	☞	211-8	전	104	3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70	남신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87	☞	236-1	대	222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55 백마마을 110-504	정해욱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88	☞	236-3	도	6	6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88 은평뉴타운 우물골 216-1201	정해욱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 조합 중앙회	근저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동2가 21-7	백헌복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
89	☞	210-7	전	34	34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33-28	변충렬			
90	☞	210-2	대	250	6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33-28	변충렬			
91	☞	236	대	353	12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 길 40-8 에이동 302호	방봉순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92	☞	236-7	전	5	5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 길 40-8 에이동 302호	방봉순			
93	☞	210-8	전	289	125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33-28	변충렬			
94	☞	210-4	대	673	14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533-28	변충렬			
95	☞	236-8	전	33	33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 길 40-8 에이동 302호	방봉순			
96	☞	236-11	도	10	10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4 길 40-8 에이동 302호	방봉순			
97	☞	237	전	565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0-5	김지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98	☞	210-1	대	33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47-44	권두오			
99	☞	210-5	도	15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87번길 47-44	권두오			
계					6,708					

○ 소로 3-228호선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10	도	569	52	국토교통부	국			
2	〃	237	전	565	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0-5	김지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3	〃	210-1	대	330	12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 로6길 43, 104동 304호	이용문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 로6길 43, 104동 304호	신필임			
4	〃	210-5	도	15	13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 로6길 43, 104동 304호	이용문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 로6길 43, 104동 304호	신필임			
5	〃	238	전	638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0-5	김지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6	〃	402-1	대	1,038	1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2	재단법인 천주교 썬밸 수도원 유지재단			
7	〃	811	도	413	192	국토교통부	국			
8	〃	403-2	도	109	109		고양시			
9	〃	404-2	대	344	42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2	재단법인 천주교 썬밸 수도원 유지재단			
10	〃	809-12	구	1,236	45	국토교통부	국			
11	〃	403-4	전	330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0-5	김지훈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9 세은빌딩803호	고양동부 새마을 금고	근저당 지상권
12	〃	403-3	전	316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1가 203	김세훈			
13	〃	403-1	대	200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1가 203	김세훈			
14	〃	404-3	도	99	95		고양시			
15	〃	404-4	대	20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8	함중환			
16	〃	406-3	도	592	36		고양시			
17	〃	406-5	답	3,051	3	서울시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230-19 형인스 카이빌 303호	박인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2-15, 202호	박인범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18	〃	405-4	도	101	1	강남구 개포동 826-39 현대아파트 105동 302 호	이춘원			
19	〃	405-1	대	653	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3-9	김한영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
20	〃	405-2	도	122	122		고양시			
21	〃	401-2	도	36	36		고양시			
22	〃	401-3	대	527	51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3-301	이상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1-3	한효정			
23	〃	401-1	대	527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351-3	한선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1-1	이진영			
24	〃	809-10	대	192	7	기획재정부	국			
25	〃	809-11	대	558	25	기획재정부	국			
26	〃	809	구	3,143	109	국토교통부	국			
27	〃	809-13	전	1,333	3	기획재정부	국			
28	〃	395-1	도	63	63		고양시			
29	〃	395-2	전	222	4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408	함종환			
30	〃	815	도	1,706	303	국토교통부	국			
31	〃	394-3	도	43	43		고양시			
32	〃	396-2	도	16	16		고양시			
33	〃	396-1	전	324	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20번길 30-31	장홍권	서울 중구 통일로 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 지상권
						경기도 과천시 뒷골1로 34	장정권			
34	〃	393-2	도	43	43		고양시			
35	〃	393-1	전	2,086	42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376-12	장정권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41-3	오산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32-26	임숙자			
36	〃	397-11	전	260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101동 201호	지현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주식회사 생보부동 산신탁	신탁
37	〃	391-2	도	116	116		고양시			
38	〃	391-3	전	107	107	기획재정부	국			
39	〃	391-1	전	425	47	기획재정부	국			
40	〃	397-9	전	106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101동 201호	지현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용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관계
41	↗	397-5	도	3	3		고양시			
42	↗	397-10	전	47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101동 201호	지현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3	↗	397-8	대	70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749-7, 101동 201호	지현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84	신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44	↗	397-7	도	10	10		고양시			
45	↗	397-4	대	132	4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6동 106호	오홍배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6동 106호	권만재			
46	↗	397-3	전	218	1	서울시 은평구 역말로 9가길 2-11, 402호	오인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지상권
47	↗	390-1	전	1,015	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	이상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한국전력 공사	지상권
48	↗	397-6	도	13	10		고양시			
49	↗	390-2	도	162	115		고양시			
50	↗	397-2	대	397	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	이상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공사	구분 지상권
계					2,167					

2) 지장물조서

번 내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및 규격	단위	수 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덕양구 지축동	806-2구	조경석	H=0.5	㎡	1.6	종가 (음식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88	소로2-306
			휼 스	H=1.1	m	1.5			
			소나무	H=15.0	주	2			
2	덕양구 지축동	806-2구	조경석	H=1.2	㎡	70.5	종가 (음식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88	소로2-306
			휼 스	H=1.1	m	48.0			
			간 판		식	1			
			소나무	H=8.0	주	1			
			관 목	H=1.0	㎡	70.5			
		향나무	H=5.0	주	7				
3	덕양구 지축동	287전	조경석	H=1.2	㎡	47.0	이진규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17, 815동 1302호	소로2-306
			향나무	H=5.0	주	4			
			향나무	H=10.0	주	2			
			관 목	H=1.0	㎡	47.0			
4	덕양구 지축동	290-6전	담 장	H=1.5	m	20.0	최봉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91-1	소로2-306
			살구나무	H=3.0	주	1			
5	덕양구 지축동	280전	조경석	H=0.5	㎡	66.0	전병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2	소로2-306
			간 판		식	1			
			간 판		식	1			
			소나무	H=2.0	주	3			
			향나무	H=0.5	주	3			
			은행나무	H=10.0	주	1			
6	덕양구 지축동	273-3전	컨테이너	6.0×3.0	동	1	대한예수 교 장로회 주님의숲 교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73	소로2-306
			벚나무	H=5.0	주	15			
			관 목	H=1.5	㎡	130.0			
7	덕양구 지축동	808도	컨테이너	6.0×3.0	동	1	이귀영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9-26	소로2-306
			느티나무	H=15.0	주	1			
			향나무	H=2.0	주	13			
			향나무	H=5.0	주	2			
			수 목	H=2.0	주	13			
			은행나무	H=20.0	주	1			
8	덕양구	810도	메쉬휼스	H=1.5	m	33.0	신창수	서울시 은평구	소로2-306

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지축동		조경석	H=1.5	㎡	21		진관내동 148-10	
			출입문	W=6.0	식	1			
9	덕양구 지축동	810도	목재휨스	H=1.2	m	53.0	김혜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4 강촌마을 807-1501	소로2-306
			출입문	W=6.0	식	1			
			소나무	H=5.0	주	22			
10	덕양구 지축동	810도	메쉬휨스	H=1.5	m	14.0	주식회사 벤티엘종합 건설	경기도 파주시 금정12길 5	소로2-306
11	덕양구 지축동	237전	간 판		식	1	김지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0-5	소로3-228
			향나무	H=7.0	주	7			
			회양목	H=2.0	주	2			
12	덕양구 지축동	404-2대	목재휨스	H=1.5	m	5.0	재단법인 천주교 썬별 수도원 유지재단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2	소로3-228
			메쉬휨스	H=1.5	m	10.0			
13	덕양구 지축동	160-9잡	문 주	블록 0.45×0.6×2.0	개소	3	박희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16	소로2-306
			대 문	철재	식	1			
			관 목	H=1.0	㎡	44.0			
			느티나무	H=7.0	주	2			
14	덕양구 지축동	286-7전	조경석	H=0.5	㎡	62.0	신득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	소로2-306
			담 장	H=1.5	m	21.0			
			소나무	H=8.0	주	9			
			소나무	H=3.0	주	3			
15	덕양구 지축동	274-14답	조경석	H=0.5	㎡	15.0	이상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347	소로2-306
			대 문	철재	식	1			
			소나무	H=5.0	주	10			
			관 목	H=1.0	㎡	15.0			
16	덕양구 지축동	278-16답	메쉬휨스	H=1.2	m	27.0	이길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50-1 올림푸스 아파트 - 1002	소로2-306
17	덕양구 지축동	278-9답	담 장	H=1.5	m	20.0	신현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40	소로2-306
			문 주	블록 0.5×0.5×2.0	개소	2			
			대 문	철재	식	1			
			소나무	H=5.0	주	7			
			은행나무	H=5.0	주	1			
			향나무	H=2.5	주	7			
18	덕양구 지축동	276-1전	조경석	H=1.2	㎡	2.0	박희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60-9	소로2-306
			휨스	H=1.2	m	3.0			

번호	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관 목	H=1.0	㎡	83.0			
19	덕양구 지축동	215전	메쉬웬스	H=1.5	m	30.0	김명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19	소로2-306
20	덕양구 지축동	214전	메쉬웬스	H=1.5	m	42.0	김명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9-19	소로2-306
21	덕양구 지축동	211-10전	웬스	H=1.1	m	23.0	남한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소로2-306
							박속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56	
22	덕양구 지축동	403-2도	간 판		식	2	김지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9	소로3-228
			향나무	H=7.0	주	2			
			향나무	H=5.0	주	1			
			장미	H=2.0	주	1			
23	덕양구 지축동	403-2도	웬스	H=1.8	m	23.0	김세훈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203	소로3-228
			문 주	블록 0.4×0.6×2.2	개소	2			
			대 문	철재	식	1			
			수 목	H=10.0	주	2			
			향나무	H=5.0	주	4			
			무궁화	H=3.0	주	1			
			살구나무	H=5.0	주	1			
목련	H=3.0	주	1						
24	덕양구 지축동	405-2도	담 장	H=1.2	m	58.0	김한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고개길 83-9	소로3-228
			대 문		식	1			
			소나무	H=7.0	주	4			
			벚나무	H=10.0	주	11			
			단풍나무	H=3.0	주	3			
			느티나무	H=5.0	주	15			
25	덕양구 지축동	395-1도	향나무	H=7.0	주	1	함종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08	소로3-228
26	덕양구 지축동	393-2도	간 판		식	2	이상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	소로3-228
27	덕양구 지축동	393-1전	간 판		식	1	이상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	소로3-228
			밤나무	H=5.0	주	1			
			벚나무	H=2.0	주	2			
28	덕양구 지축동	397-2대	문 주	블록 0.5×0.5×2.2	개소	1	이상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397-2	소로3-228
			담 장	H=2.3	m	9.0			
			수 목	H=4.0	주	1			